

# 2004년 축산 자조금 조성

농림부

## 1. 목적

-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

-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(2003.5.13 제정, 2001.11.14 공포)
- 축산법 제26의 3(축산자조활동자금의 지원)

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
-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별로 자조금 조성액의 100%범위 이내에서 지원
- 자조금 조성 축종의 확대 유도

## 3. 근거법령

## 4.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

### 《사업개요》

#### 가. 사업내용

##### 1) 배경

-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(젖소, 돼지, 닭)분야 자조금 사업 실시
-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(2000.6.1) 개정을 통한 축산물 자조금 근거 규정 마련

-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(2002.5.13)이 제정되어 축산자조활동자금 근거규정 마련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2) 사업내용

- 축산물(우유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쇠고기, 오리고기, 녹용 등) 소비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

3)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용도

- 축산물 소비홍보
-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
-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그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

나. 2004년도 지원계획

〈표 1〉 참조

5.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

- 사업담당기관(농림부 축산정책과, 축산경영과, 축산물위생과)

나. 신청자격 :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축산단체

다. 신청절차

- 2004. 3. 31.까지 사업담당기관에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2004. 4. 20. 까지 예산요구 C

〈표 1〉 2004년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2003년 축발기금	2004년 사업비					
		합계	축발기금			지방비	자부담
			소계	보조	융자		
축산자조활동자금	2,668	20,500	10,250	10,250 (50%)	-	-	10,250 (50%)
- 한 우	-	1,600	800	800			800
- 젖 소	2,100	4,200	2,100	2,100			2,100
- 양 돈	318	9,000	4,500	4,500			4,500
- 신란계	50	3,000	1,500	1,500			1,500
- 육 계	200	2,000	1,000	1,000			1,000
- 오 리	-	500	250	250			250
- 사 승	-	200	100	100			100